##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131

발의연월일: 2022. 11. 7.

발 의 자:구자근ㆍ권명호ㆍ김도읍

김석기 · 김선교 · 박대수

성일종 · 안병길 · 이 용

장동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전략기획단은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,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등 산업기술 R&D 혁신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두도록 되어 있음. 다만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&D 전담기관으로 조직·인력구성 및 운영체계가 현행 법령상 주요 업무인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어 전략기획단의 R&D 전략기획·혁신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, 통계분석 등의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&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 흥원으로 이관하고,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·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.

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.

'산업기술 R&D 전담기관 개편방안'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R&D 사업을 총괄·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, 평가관리원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과제기획 보다는 차별화된 디지털 기획 플랫폼을기반으로 미래 유망 신규 사업의 설계·기획을 확대하는 등 R&D 기획의 전문성과 체계적 기획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.

또한 관리자가 아닌 수요자·시장 중심의 R&D 조력자·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변경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이던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 원 소속으로 함(안 제6조제3항).
- 나. 기능별 MD 채용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"주요산업분 야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"를 "기술개발 투자관리자"로 변경함(안 제6조제4항).
- 다.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11조제4항, 제39조, 제44조제1항, 제45조제1호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이하 "평가관리원"이라 한다)"을 "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"기술진흥원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"를 "기술개발 투자관리자"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전단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
제39조 제목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이하 "기획평가원"이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평가관리원"을 "기획평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전단·후단 중 "평가관리원"을 각각 "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평가관리원"을 "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
제45조제1호 중 "평가관리원"을 "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본다.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- 제18조제1항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 으로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)	제6조(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)
① · 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	③
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<u>제39조</u>	제38조에
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	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
원(이하 "평가관리원"이라 한	"기술진흥원"이라 한다)
<u>다)</u> 에 전략기획단을 둔다.	
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	4
단장 및 7명 이내의 <u>주요산업별</u>	<u>기술개발</u>
기술개발 투자관리자(이하 "투	<u>투자관리자</u>
자관리자"라 한다)를 포함하여	
구성한다.	<u>.</u>
⑤・⑥ (생 략)	⑤・⑥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~	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	4
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	
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	
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	
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	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-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기관・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	
개발사업의 과제기획・관리 및	
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등"	

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수 있다.

## ⑤ (후 략)

- 제39조(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)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 한다.
  - ② 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③ <u>평가관리원</u>에 관하여는 제3 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기술진흥원"은 "<u>평가관</u> 리원"으로, "제3항 각 호의 사업"으 로 본다.

제4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기

⑤ (현행과 같음)
제39조(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
설립 등) ①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이하
"기획평가원"이라 한다)
② 기획평가원
③ 기획평가원에
<u>기획평</u>
<u>가원</u>
,
제44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①

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기술진흥원·평가관리원·세라믹 기술원·한국공학한림원·시험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②・③ (생 략)

- 제45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.
  - 기술진흥원, <u>평가관리원</u>, 세 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
    (생략)

<u>기획평가원</u>
,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45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
의제)
<u>.</u>
1. 기술진흥원, <u>기획평가원</u> , 세
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